후원을 기다립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는 외국인 노동자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상담소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연대한 단체입니다. 외노협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외국인 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후원자가 되주시기를... 자세한 사항은 외노협(744-9063)이나 각 상담소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흥은행 계좌번호 325-06-227109 최정규

외국인 노동자 관련단체 주소록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Songnam Migrant Workers' House)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87
Tel: 0342)756-2143-4, 757-8093(겸) Fax: 758-4628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Bucheon Foreign Workers' House)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84-5
Tel: 032)651-8351, 668-0077 (겸)

○중국노동자센타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8-1
Tel:02) 798-6355. 798-6356(겸)

○외국인노동자 마을 (Foreign Workers' Community Center .
서울시 강북구 미아6동 645-112
Tel: 02)983-3783 Fax: 982-9489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The Association for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127-1 우신빌딩
Tel: 02)795-5504 Fax: 6055

○ 엠마우스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100 (천주교 수원교구청)
Tel: 0331)257-8501 Fax: 44-3991

○ 안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749-2 번지
Tel: 0345) 492-8785. 492-8756(겸)

○ 시화일꾼의 집 (Shiwa Ilkun's House)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187번지 정왕천주교 (내)
Tel: 0345)497-7151(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Korea Church Women United)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136-56 기독교연합회관 1110호
Tel: 02) 708-4181-3 Fax: 708-418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Tel: 02) 522-7284 Fax: 522-7285

○프란츠스코 교회 이정호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녹천리 산33-9(478-840) 대한성공회 성생원
Tel: 0346-594-5825

○ 대전 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
306-0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1-43
Tel: 042) 623-2387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152-059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496-43. 101호
Tel: 02) 869-1347 Fax: 837-140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서울 성북구 삼선동 1가 12-1 삼선빌딩 4층
Tel: 02) 765-2010 Fax: 765-2011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Joint Committee of Migrant Workers in Koera)
서울 성북구 삼선동 1가 12-1 삼선빌딩 4층
Tel: 02)744-9063 Fax: 745-9804

○천주교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서울 중구 저동 1가 27-2
Tel: 02) 779-2049, Fax: 773-2627

○ 인천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3번지 가톨릭센타
Tel: 032) 765-1094 Fax: 761-9546

○대구 근로자회관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 35
Tel: 053-253-1313 Fax: 255-4861

○구미 가톨릭근로자센타
경북 구미시 원평1동 분도신협 3층 374-2
Tel: 0546-52-2314 Fax: 52-6929

○ 이리 노동자의 집
전북 이리시 창인동 1가 235 창인동 성당(내)
Tel: 0653-52-6949. 855-2325(겸)

○대구 나눔의 집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 562-6 2층
Tel: 053)556-6338

○부산 가톨릭노동상담소
부산광역시 북구 괘법동 562-43 2층
Tel: 051) 328-9513 모뎀 :(천리안) KATOL

○희년 선교회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3동 148-40(정환빌딩 4층)
TEL: 02) 861-4394 FAX: 858-7829

○마산노동문제상담소
(630-010)경남 마산시 석전동 224-7 여성회관(내)
TEL: 0551) 93-8050 FAX: 8587829

인권 자료실
등. 도서번호 자료번호
A36 179

노동과 평등

제 2 호 LABOR & EQULITY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소식지
JOINT COMMITTE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발행인:김해성,박석운
박순희,이철순
편 집: 외노협홍보부

우리들의 인권OK!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OK?
이상하지 않은가 누구에게나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 우리들과 외국인 노동자로 분되어 있다는 사실이.
모든 차이와 차별의 벽이 자유와 평등의 강물에 허물어져 내리는 소망을 꿈꾼다.
이 땅에서 여전히 '그들'이기 마련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서 '외국인'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그날을 위하여.

◎ 기획글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지위

◎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도입에 관하여

◎ 총선과 외국인 노동자

◎ 연재기사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운동

◎ 현장과 경험
좌절당한 고향가기

◎ 방글라데시 노동자 모임

◎ 상담소 소식
성남, 부천

◎ 외노협관련단체
주소록

¶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와 무관하지 않지만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 허가가 즉각적인 평등주의의 한 형태라면 평등의 실현에 우리는 주저할 것이 없다고 본다.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법적지위를 조명해 보았다.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지위

최홍엽 (홍익대 강사, 법학)

1.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점차 개선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古代에는 국가간의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곧 敵이었다. 게다가 고대의 국가란 단순한 정치조직을 넘어서 종교적, 부족적 단체였다. 따라서 타국의 출신자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종교적 이단자이기까지 했다. 외국인이 보호를 받는 경우에도 그것은 법률제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호의를 베푼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 국제 교역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보호가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각국은 자국민의 해외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문제를 국제법의 틀 내로 끌어들인 데에 이론적 기여를 했던 사람은 18세기 스위스의 법학자인 Vattel이었다. 그는 "외국인을 부당하게 처우하는 자는 그를 보호해야 할 국가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각국은 Vattel의 이론에 기초하여 자국민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외국인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외국인의 본 권리인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법적 형식을 지녔다. 이때에도 개인은 국제법상의 권리주체가 아니었던 것이다. (정인섭, 외국인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2.).

외국인의 법적지위의 발전에 대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인류는 참담한 인권유린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으며, 전쟁을 전후하여 정치적 난민이 다수 발생했다. 2차대전 이후 인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은 국제법상으로도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2차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연합(UN)도 그 헌장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조장, 장려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달성하는 것"이 UN의 기본목적의 하나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UN의 회권국은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장 55조).

"모든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 종교, 정치적 이견..... 기타 다른 지위"에 따른 구별없이 선언상으로는 모든 권리의 자유를 향유한다.

2. 차별없는 보호의 원칙

UN은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CHR)가 기초한 포괄적인 국제 권리장전을 천명한다. 그것이 바로 1948년에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이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다른 지위"에 따른 구별없이 선언상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고 하였다.

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의 균등대우의 정신은 다시 국제인권규약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1966년에 제정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A규약)의 전문을 보게 되면,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규약 제2조 제2호는 "이 규약의 당사국들은 이 규약에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함으로써 이 국제규약을 적용함에 있어 인종, 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규약이 정하고 있는 주요한 권리들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근로권 ; 제6조),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근로조건 ; 제7조), 노동조합결성 가입 활동 파업권(제8조),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제9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국제인권규약의 차별없는 보호의 정신은 지역적 인권조약인 유럽인권조약, 미주인권조약, 아프리카인권헌장 등에도 공통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밖에도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조약 가운데에도 외국인 차별금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ILO의 111호조약 (1958년,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에 관한 조약)을 보게 되면, 제1조와 제2조는 회원국이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에 의하여 차별대우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5조가 내외국인 균등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국제법의 흐름과 동일한 맥락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외국인노동자의 지위에 관한 국제조약

이상에서는 차별대우 금지 원칙에 대한 국제조약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위를 다루고 있는 조약들도 있다. 이러한 국제조약을 형성한 데에는 것은 ILO의 공이 컸다. ILO는 1949년 제97호 '이민노동자에 관한 조약'과 같은 해 나온 제86호 권고, 그리고 1975년 제143호 조약과 같은 해의 151호 권고를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제97호 조약 제6조는 적법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균등대우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a. 1) 임금, 가족수당,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유급휴가, 가내노동의 제한, 최저연령, 훈련, 여자와 연소자의 노동 2) 노동조합원의 자격과 단체교섭의 이익 3) 숙박시설
b. 사회보장
c. 고용관련세, 조합비, 각출금 d. 법적절차

ILO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호를 꾀하였는데, 제143호 조약은 제9조 제1항에서 "이민노동자가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그 지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본수, 사회보장 및 기타의 급부는 과거의 고용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근거로 하여 본인 및 그 가족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불법 체류했더라도 기왕에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청구나, 그동안 입은 산재에 대한 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간의 노동력의 이동이 늘어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UN도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UN은 특히 불법,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노동자거래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었다. 즉 1972년 7월 UN의 경제사회이사회는 불법 및 비밀리의 거래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에 관한 문제의 검토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지시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그리고 유엔총회도 같은 해 11월 15일 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당초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유엔의 의도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외국인노동자 일반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 12월 UN 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조약은 총 93개조에 걸쳐서 외국인노동자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상

ILO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 "노동에 대한 임금 청구나 산재에 대한 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 ..... 산업 연수생이 말 그대로 기술연수중이라면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른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 국제법상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역행하고 있다

세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4. 국내에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법적지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여러 부류가 있다. 산업연수생, 산업연수생 이외의 취업자격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정주 외국인(주로, 화교)으로 나뉘며, 이러한 자격 자체가 없는 불법체류자가 있다. 이 가운데 외국에 비해 가장 특색 있는 제도가 이른바 산업연수생제도이다. 그러나 법률적인 문제가 많은 제도가 또한 이 제도이다.

내국인은 곧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지만, 외국인 취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기본틀을 가진 이 제도는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위에서 살펴본 국제법상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역행하고 있다. 특히 1995년 2월에 발표된 노동부의 지침(「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와 8조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위 지침은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본다.

노동부의 지침에 의하면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퇴직금이나 해고제한에 관련되는 규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그렇지만 간단한 예로서 1년 이상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연수생이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법원이 연수생이라 하여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의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의 경우나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의 경우에도 그 근로의 실질에 의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920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27730 판결)을 취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이 말 그대로 기술연수 중이라면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른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내국인과 균등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하겠다.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도입에 관하여!

▣ ▣ ▪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 ▣▣

◇노동부의 발표와 중기협의 반발

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인력도입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과 잦은 인권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제도적인 허점을 새로운 고용허가제라는 정책을 통하여 고쳐 보겠다는 얘기였다. 한편 노동부의 발표에 따라 발끈한것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였다.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법 적용을 포함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인건비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반대 이유이다.

노동부의 발표와 함께 거센 논쟁이 일고 있는 새로운 제도는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닌 것이다. 기존에 끊임없이 노동력 착취와 인권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연수제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하였고 이때마다 노동부는 새로운 제도 마련을 여론에 흘리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유야 무야 넘어가곤 하였다. 그러나 과거와 약간 다른 것이 있다면 선거라는 상황과 구체적인 일정(금년 정기국회 통과와 내년 7월 시행)의 발표이다. 그나마 과거와 틀린 이러한 발표가 내심 입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든다.

그동안 외국인력 도입은 법무부 장관 훈령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왔다. 법령도 없이 겨우 장관이 하급 직원에게 명령하여 시행하는 "훈령"에 의해 시행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체류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이 제도를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관계법령도 없이 시행된 외국인력의 도입은 근본적으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출발한 것이다.

◇ 외노협의 기본 입장

금번 노동부의 입법 취지는 기존의 문제를 일정정도 극복하는 계기로서 그 의미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내국인과의 동등한 대우라는 것은 "*노동법의 동등한 적용*"을 전제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는 그동안 꾸준히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법적용을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입법 이후 영세기업들의 잦은 임금체불에도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에 아무말도 못하고 고스란히 임금을 빼앗겨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쓰러운 처지가 조금이라도 완화되리라 생각하며 비로소 이들이 연수생이라는 허울을 벗고 진정으로 "*노동자*"라는 자신의 이름을 찾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동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하여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였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그 이유가 너무나 치졸하고 뻔뻔스럽기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 기존 중소기업들은 값싼 단순인력으로 자신들의 미약한 자본으로 그나마 배불러 왔던 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저임금에 툭하면 체불, 그리고 산재엔 교묘히 피해 다니며 연수계약 또는 불법체류라는 신분상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중소기업이 현존제도를 우기는 모습이 너무나 꼴사나워 보이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밀월관계는 중지되어야 한다. 기형적인 고용구조속에서 노예착취제도를 방불케 하는 외국인력사용은 안정성도 없을 뿐 아니라, 인력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연수생 제도를 이탈한 외국인이 남아있는 외국인보다 많다는 것은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우리는 고용허가제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또다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유로이 이동하지 못하고 지정된 사업장내에 구속되어야 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결코 찬성만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기존의 연수제도가 안고 있었던 각종 노동통제와 강도 높은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가 고용허가제로 극복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웃나라 일본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일본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허가제라는 정책으로 양성하고 있다. 고용에 대한 각종시험과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하므로서 자연히 합법체류의 기회를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값싼 불법체류 노동인력을 사용하므로서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일본의 고용허가제인 것이다. 이것을 한국이 다시 도입 한다는 것은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니고, 결코 연수제도가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 대다수의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자유로이 자신의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벌써 연수제도를 몸으로 거부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연수 사업장을 이탈하기 위해 눈치를 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이라는 명분으로 다시금 족쇄를 채우는 제도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해결방향

그렇다고 현재에 우리가 가장 올바른 외국인 고용정책의 모범답안을 제출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제시와 노동부 관계자들의 "법무부와 통상산업부의 반발이 심해서 입법추진이 힘들 것 같다."와 같은 태만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항상 정부의 일방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희생으로 감내됐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이 뼈저리게 느껴 왔다. 바로 우리는 노동부의 때가 되면(선거를 의식했을 것이다.) 선심성으로 흘리는 공약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갈망하는 15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뻔히 문제가 보이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노동부의 독선적인 행태는 지양되어야만 한다.

외국인 고용정책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 단체와 해당 외국인노동자 단체와의 긴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문제에 대하여 한국에서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과의 대화 또한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각국들은 자국의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상기했으면 한다. 우리는 다시금 노동부가 사용자측의 대변인이 아닌 노동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진정한 노동부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한 노동부일 때 "법무부와 통상산업부에 밀려서 ..... "라는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민족감정이나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겨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한국 노동자 대

외국 노동자로

바꿔치기 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집-인권은 표로 환산할 수 없다!!!

각당 4.11총선 공약 평가

■■■ 박상린 편집위원 ■■■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은 법무부 장관 훈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나라의 중대한 정책이 입법에 의하지 않고 장관이 부하 직원에 대하여 내리는 업무 지시에 해당하는 '훈령'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다들 동의할 것이다.

얼마전 주요 일간지에 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예고안이 실렸다. 비록 미흡하나마 어느정도 진보적인 생각을 담은 이 예고안을 우리는 희망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접하는 우리들은 이 일각의 희망마저도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다.

구인난과 구직난이 공존하는 왜곡된 고용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대책없는 외국인력수입의 문제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저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정책은 그 직접적 수혜자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마약주입식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용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더욱 클 뿐만 아니라 국내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됨과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도 열악한 근로조건과 차별대우, 인권유린 등으로 고통받게 된다.

이런 연유로 필요한 외국인력을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우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철폐하고 근로기준법의 동등한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동시에 불합리한 제도하에서 양산된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하여 재배치하고 신규 외국인력수입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번 총선의 각당 공약을 검토해보았다. 검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 및 근로 기준법, 사회보장 등의 동등 적용 여부

두번째로 불법 체류자 문제의 해결여부-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입법 의지 천명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당의 선거 공약을 검토해 보자.

●신한국당- 각 당의 공약중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당이다. 노동부 안이 이미 발표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중소기업에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공급확대를 약속하는 공약을 발표했을 때 이미 문제의 본질은 밝혀진 것이 아닐까?

집권여당과 행정부의 안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추출할 수 있었다. 정부나 여당의 대응이 다분히 정세적이라는 것을...그리고 문제의 해결은 여러 압력단체들과 시민운동단체, 노동단체들의 주도아래 전국민적인 여론화로 해결될 수 밖에 없음을...

노동부안이 한국의 OECD가입을 앞두고 국내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UN의 도마위에 오르자, 즉각적으로 나온 것이라면 신한국당의 안은 표가 곧 진리라는 인식하에 한표도 가지고 있지 않는 외국인들을 볼모로 국내의 중소기업주들에게 사탕발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차치하자. 그러나 입법부에서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번의 신한국당의 총선 공약은 매우 위험스런 것이다. 불법체류자의 문제는 언급이 없다.

●국민회의- 기존의 문제점들은 덮어둔채 연수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을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불법체류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가 불거지는 지점은 연수제도 자체라는 것을 염두에 둘때 국민회의의 공약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민주당-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근로기준법도 적용한다고 한다 또한 불법취업자 사면 및 재취업 보장을 약속했다.

●자민련- 어떠한 공약도 없었다.

민주당만 외국인력정책의 방향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국민회의는 현행 연수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문제점만 개선한다는 취지이고, 신한국당은 무분별한 외국인력 정책을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획기사 ●●●●

한국의외국인 노동자 운동의 역사2

-외국인 노동자 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지난호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에서 경실련 농성까지를 다루었다. 이번 호에서는 명동성당 내에 산업기술 연수생농성과 그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인 노동자운동에서 한두차례 이야기되는 명동성당 농성의 과정과 그 의의는 무엇인가?

◆경실련 농성 이후

경실련 농성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국내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인권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정부는 산업 기술 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력을 수입하기에 이른다.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정부가 계약을 체결한 여러 국가에서 산업기술 연수생들을 모집해서 국내에서 기술을 연수하게끔 하는 제도였다. 이들은 주로 현장에서 노동경험과 기술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게 되자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들여 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정식으로 노동인력을 들여올 경우 노동법으로 보장된 권리와 지위를 보장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의 저임금 노동력을 수입하기에 이른다. 정부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현지에서 모집하고 현장에 배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맡긴 것을 보면 이 제도가 국가간 계약에 의해서 기술을 연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인력난을 해결할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실제 이들의 임금은 170~220달러(약 15~20만원)에 불과하다-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중기협에 의해서 모집되고 현장으로 배치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들은 연수제도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휴일도 없이 하루평균 10시간의 강제노동과 외출과 외부와의 연락을 통제당한 채 공장안에서 감금을 강요당했고 공장안에서 한국인 노동자들과 공장간부들에 의한 폭행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정부는 외국인력을 들여오는데 있어서 정식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 노동법에 보장된 권리와 지위를 보장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의 저임금 노동력을 수입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하루평균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제당하고 외부와의 출입을 통제당했으며, 또한 폭행과 200달러가 못되는 임금을 몇 개월간 체불된 상태였다.

◆산업기술연수제도에 희생된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연수생들에 대한 인권탄압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외부에 점차 알려지게 되면서 민주노총과 피난처는 94년 10월에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인권 실태 보고대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보고대회에서는 산업기술연수생이 저임금으로 장시간노동을 강요당하며, 불과 20만원도 안되는 임금조차 본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현실과 인력송출과정에서 현지의 계약조건과 한국에 와서 실제 상황과 다른 점을 폭로했다. 또한 정부에 산업기술연수생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과 공장내의 폭행, 감금, 강제노동의 금지 사업주와 인력송출업자에 대한 법률적 처벌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한달후 11월 25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피난처,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등 12개의 단체가 연대해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인권실태개선 캠페인과 종묘공원에서 명동성당까지 항의행진을 통해서 보고대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시 요구했으나 정부와 중기협의 반응은 한달전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1994년 12월 5일 네팔 산업기술연수생 13명이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로 피신해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하루평균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제당하고 외부와의 출입을 통제당했으며, 또한 폭행과 200달러가 못되는 임금을 몇 개월간 체불된 상태였다. 이들 13명과 피난처는 한달동안 공동으로 숙식하면서 93년도 경실련 농성에서처럼 산업기술 연수생의 문제를 폭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면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12개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서 농성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처절한 싸움-명동성당 농성

95년 1월 9일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운동에 있어서 기억될 만한 날이 될 것이다. 이날 네팔인 13명과 피난처 실무자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명동성당 입구로 진입해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장기간의 농성이 될 것이라는 실무자들의 초기예상과는 달리 명동농성은 첫날부터 언론의 관심을 크게 샀다. 농성첫날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선전과 서사술을 온몸에 감아 강제, 감금노동을 항의한 퍼포먼스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호의적인 언론의 반응은 농성이 시작한지 5일정도 지나자 점차 시들해졌다. 몇몇 일간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농성을 배워 간다는 논조의 기사를 싣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사회의 여론에 호소해서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농성은 그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농성 주체측에서는 장기간의 농성을 대비한 준비만 논의가 되었을 뿐 언론의 예기치 못한 호응, 정부와 중기협의 협상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대응책은 거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농성과정의 어려움은 언론의 보도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농성당사자와 한국인 실무자들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심각한 것이었다. 네팔연수생들이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 서툴렀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와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상황에 대처해나가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농성장 주변에 투입된 공권력은 네팔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이 언어차이로 인해 전달되지 못해 농성은 더 어려워졌다. 그런 상황중에 일본주재 네팔대사가 명동성당에 직접와서 이들을 설득했다. 네팔대사는 농성이 계속될 경우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며 적당한 선에서 농성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네팔대사는 중기협에서 그 비용을 들여 데리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네팔 산업기술 연수생들은 농성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농성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자신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하나도 관철되지 못한채 협박에 가까운 자국외교관의 설득과 한국 정부와 중기협의 위압적인 분위기 조성에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다.

명동성당 농성은 이후 외국인 노동자 운동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비록 농성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는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운동이었는지 모르지만 한국사회에 미친 그 파장은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명동성당 농성은 우선 언론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하며 지내왔나를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 이 점은 일반 시민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특수한 사람들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한국사회의 성장제일주의 자본주의의 논리로 희생당한 사람들 중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움직임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끌어 냈으며 그 결과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노동자 상담소가 새롭게 시작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외국인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명동성당농성을 전후해서 외국인노동자 운동의 질적인 차이가 구분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각 지역에 상담소 개설을 비롯해서 외국인노동자 운동이 양적으로 증가했다는 점도 구분이 되지만, 외국인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과제 민주단체들의 연대상황도 그전과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단순히 인권의 사각지대쯤으로만 여겨졌던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이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보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명동성당 농성은 이후 외국인 노동자 운동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비록 농성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는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운동이었는지 모르지만 한국사회에 미친 그 파장은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명동성당 농성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땅에서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하며 지내왔나를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

구릉씨의 절망적인 고향가기

한국사회는 구릉씨에게서 땀의 대가만 앗아간 것이 아니라 고향에 가고 싶다는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 버렸다.

◆한국에 와서 월급이 250달러라는 말을 들었어요. 속았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어요.

◆몸도 마음도 상처받을대로 받은 구릉씨에게 고향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마저 한국은 허용하지 않았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20대 후반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깊은 주름,꺼칠한 피부,충혈된 눈으로 보아 40을 바라보는 아저씨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네팔에서 온 구릉씨의 첫인상이었다.

네팔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던 구릉씨는 1994년 부인과 귀여운 두 딸을 남겨둔 채 산업기술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그가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송출회사에 준 돈은 무려 2,500달러 였다. 월 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빚까지 지며 거액을 주고 온 것이다.

"한국에 와서 월급이 250달러라는 말을 들었어요. 속았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어요."

그는 이렇게 한국생활을 시작했다.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일만 시키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게 했어요. 월급은 한번도 직접 받아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동안 구릉씨는 먼저 한국에 왔던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친구들은 비자기간이 지난 불법취업자들이었다.

"친구들은 저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월급을 2배도 넘게 받았어요.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공장도 옮길 수 있었어요. 저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공장을 도망가기로 했어요."

그는 이렇게 불법취업자가 되었다. 불법이라는 말이 가지는 위험에 대한 생각보다 당장 한국에 오기 위해 진 빚을 갚아야 했고,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도 생각해야 했다. 구릉씨는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지 무언가 두려운 눈빛으로 주변을 한번 휘 둘러보았다.

불법취업자도 편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당시 그는 아직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장에서 일한지 얼마되지 않아 손을 다쳤어요. 손가락은 짤리지 않았지만 30바늘이나 꿰맸어요. 한달동안 일도 못했어요. 보상은 생각도 못했어요. 월급이라도 달라고 말했더니, 사장님은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느냐고 화를 내면서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신고하면 일도 못하고 잡혀서 네팔로 가기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을 갚아야 했는데 아직 제대로 집에 돈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약자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를 구릉씨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구릉씨는 다친 손을 보여주며 애써 웃어보려 했다. 체념의 눈빛, 그에게 희망이란 그저 말일 뿐이었다.

"일을 다시 시작하고도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월급날을 훨씬 지나서 주었지요. 두달이 넘게 월급을 주지않아 사장님한테 월급 달라고 하니까, 귀찮게 하면 신고한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월급도 받지 않고 나왔어요.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구릉씨는 더이상 한국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고향에 가고 싶었어요. 자그맣게 웃고 있는 두 딸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출입국관리소에 찾아 갔어요. 네팔에 가겠다고 했더니 벌금을 내야 한대요. 200만원이나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했어요. 돈이 없다고 하니까, 벌어서 다시 오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 했다. 향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몸도 마음도 상처받을대로 받은 구릉씨에게 고향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 희망마저 한국은 허용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구릉씨의 눈에 눈물이 스쳐간다.

외국인 노동자 마을
정 진우

■방글라데시노동자 모임(B.S.K.T) 소개■

▣▣▣시화일꾼의집(안산)▣▣▣

3월 3일 안산 한양대에서는지난 방글라데시 노동자모임(B.S.K.T) 의 1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B.S.K.T는 1995년 2월 18일 발족된 한국에 있는 방글라데시노동자들의 모임이다. 의료문제나 산재로 어려움에 처한 동료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회원들은 매달 2,000원 - 5,000원까지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6명으로 시작한 이 모임은 현재 14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지난 1년동안 B.S.K.T.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수술을 받으러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확보를 위한 행사 지원 그리고 이국 생활의 향수를 달래기 위한 안산지역 외국인노동자 추석잔치를 주최하였다.

B.S.K.T.의 1주년 기념식은 개회식, 공개토론회, 노래자랑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공개토론회때 제기되었던 의견을 요약해서 소개하려 한다. 우리는 현재 한국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에게 가장 시급히 제기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토론회의 주제로 잡았다.

첫째, 불법체류자 벌금문제에 대하여

벌금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곳은 전세계적으로 대만과 한국밖에 없다. 외국인노동자들중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월급 한두번 떼 먹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고 산재을 당하고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간 사람도 부지기수다.

한국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우리들의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하나도 없으면서, 불법체류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처사이다. 또한 우리가 불법 체류하면서 구걸을 해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불법체류 신분을 속이고 일을 한 것도 아니다. 한국의 공장등에서 필요하니까 불법체류자인지 뻔히 알고도 고용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의 한국경제도 외국인노동자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국에 불법체류자들이 10만이 된다는 것은 한국인들 거의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가 한국에 머물며 일을 하는 동안은 필요하니까 눈감아 주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실제 우리 주위에 보면 벌금을 낼 수 없어서 귀국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계속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인 만큼 다른 나라 모인들과 연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간 몇 차례의 농성으로 그래도 조금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처지가 개선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우리들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조직문제에 관해서

한국내에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 자치적으로 만든혹은 상담소와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모인이 있다. 현재 이 모인들은 서로간에 개략적인 소식만을 듣고 있을 뿐 단 한 번도 공식적인 만남은 갖지 못했다.

각 모인의 특성들이 있을테니 각자가 통합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서로 협동이라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1년에 한두차례 정도 공동행사를 추진하도록 하자.

여러 사정으로 토론회는 내용있고 성실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눈 의견들을 여기에 소개한 것은 우리가 고민하고자 했던 것을 여러분들께도 제기하고 싶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보다 더 폭넓은 논의가 되어 한국내의 방글라데시 노동자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상 담 소 소 식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식

질병 예방차원의 의료활동과 영화상영을 활발히 하고 있다.

매월 첫째주를 제외하고 경동교회와 향린교회 그리고 청년한의사회가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비싼 의료비로 치료를 힘들어하는 외국인노동자들과 질병예방 차원에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약 4~50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으며 꾸준히 진료 받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후 청년한의사회에서는 상설진료소를 상담소에 개설하고 외국인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의료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금의 의료봉사도 어려운 지역주민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활동과 함께 액정비견으로 영화상영을 하고 있다. 수준 높은 영화상영을 통하여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의식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호응도 높고, 외국인노동자들과의 대화시간이 증가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것 같다. 때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상영영화를 선택하기가 까다롭지만 관심있는 외국인노동자들과 함께 상영할 영화(회교권 사람들은 미국이나 홍콩연화를 싫어한다.)에 대하여 토론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어 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주말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의 M.T가 4월13에서 14일 까지 1박2일간 양평에서 있었다. 그동안 수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 스스로 자각에 의한 그들의 현 위치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일방적인 도움과 봉사적 대우는 이들의 권리 쟁취와 능동적 조직 결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양자 모두를 그 자리에서 맴돌게 만들 뿐이다.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소식- 1년동안의 활동을 반성하며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이 지난 3월 31일로 개소 1주년이 되었다. 외국인노동자가 처한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취지로 출발하여 현재는 산업연수생제도 철폐 불법체류노동자 사면, 노동허가제 실시 등을 활동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사망관련 8건, 산재사고 관련 80건, 폭행사고 관련 28건, 임금체불 관련 280건의 상담을 하였다. 이 중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고,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본 상담소가 중재하고 있다. 상담소를 가장 많이 이용한 외국인을 국가별로 보면 네팔 533명, 스리랑카 250명, 방글라데시 240명, 미얀마 80명, 필리핀 35명 순이며 총 14개국의 외국인이 도움을 요청하였다.

임금체불은 작년 한해 동안 나타났던 엄청난 부도에 의한 것과 고의적 체불이 반반이며, 의료문제는 불법체류라는 악조건으로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가 많다. 또한 산재와 관련해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산재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대부분 산재가입이 되지 않아 제대로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별 실효를 거있지 못한 실정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할 때 의사소통이 안돼 어려운 것을 돕기 위해 매주 일요일에 한국어교실을 열고 있고, 점차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본 상담소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기독교 선교단체의 의료팀이 정기검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그들 스스로 자각에 의한 그들의 현위치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일방적인 도움과 봉사적 대우는 이들의 권리쟁취와 능동적 조직결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양자 모두를 그자리에서 맴돌게 만들 뿐이다.

자기 삶의 주인의식을 붙어 넣어 장애물을 하나하나 벗어던지고 자신의 권리를 차분히 쌓아나가는 인내와 투쟁의 정신을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지칠줄 모르는 성실함과 도전의식으로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